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멀티미디어학회(Korea Multimedia Societ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멀티미디어 및 IT 분야에 관한 이론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된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멀티미디어에 관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멀티미디어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2. 멀티미디어에 관한 지식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
3. 멀티미디어 기술의 상호 협조 및 정보교환
4. 멀티미디어에 관한 표준화 사업
5. 국제적 학술 교류 및 기술 협력
6.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7. 멀티미디어에 관한 문헌 발간
8. 산학협동 증진
9. 멀티미디어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업 추가
10.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구) 1. 본 학회에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명예회장단 및 사무국을 둔다.

2.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각종 위원회
- (2) 각종 연구회
- (3) 지부
- (4) 기타 한시적인 기구

3.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 학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종류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멀티미디어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멀티미디어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준회원 : 멀티미디어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 또는 멀티미디어관련학과 학생.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특별회원 : 멀티미디어 발전에 기여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5.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 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 학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종신 및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3. 특별회원 기관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자 1인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인정한다.

제 8조(회원의 자격정지, 제명, 및 복권)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체납 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자동으로 복권된다. 단, 자격정지 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자격을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 9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 회원 중에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 및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 10조(회비) 정회원과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의 입회비, 종신회비, 연 회비, 특별회비 액수는 각급 회원 종류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1조(회비의 납기) 회비의 납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체납회비는 정기총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일반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1. 회장 : 1인
2. 명예회장단 : 약간명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15인 이내
4. 협동부회장 : 약간 명
5. 운영조직위원 : 60인 이내
6. 일반이사 : 120인 이내
7. 감사 : 2인
8. 특임회장 : 약간명
9. 산학이사 : 다수

제 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및 운영조직위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다만,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결원에 대해서는 제16조의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 14조(임원의 선출) 1.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별도의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의해 당선된 후보를 이사회의 인준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3. 부회장, 협동부회장, 특임회장, 산학이사는 차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4. 명예회장단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5. 운영조직위원은 차기 회장이 정기총회 이전에 선임한다.
6. 일반이사는 차기 회장이 정기총회 이전에 선임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단, 전임 일반이사 중에서 2/3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7.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명예회장단은 수석부회장 입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학회운영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특임회장, 협동부회장, 산학이사는 학회의 대외 활동 및 재정 운영에 협조한다.

5. 운영조직위원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한다.
6. 일반이사는 당연직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운영한다.

- 제 16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직무 대행)** 1.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잔여기간을 합쳐 선출시 차기 회장으로로서 부여된 임기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3.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최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제 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운영위원회 참관

제 4 장 총 회

제 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 제 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시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 20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위임장 제출자 포함)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1조(총회 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2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당연직이사와 일반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 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24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년2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회장 또는 감사 2인 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2/3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6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5. 기타 수입금

제 27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조(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 29조(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0조(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위임장 제출자 포함)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조(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 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3조(규정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13. 11. 01. 정기총회에서 개정
3. (경과조치) 2014년도 임원의 임기는 개정 정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년으로 한다.